
		<h1>보도자료</h1> <p>2021. 2. 22.(월) 배포</p>			
보도일	<b>2021. 2. 23.(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b>인터넷·방송·통신 2. 23.(화) 06:00 이후 보도 가능</b>				
담당과	고교교육혁신과	담당자	과 장 김혜림 (☎ 044-203-6276)	교육연구관 김승환 (☎ 044-203-6686)	교육연구사 이영웅 (☎ 044-203-6722)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법제화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교육부 제2021-57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 나.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 1)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 등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badacga@korea.kr](mailto:badacga@korea.kr)
- 팩스 : 044-203-65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전화 (044) 203 - 6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 ①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 ① 영재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p> <p>② 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1.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 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 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p>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고교교육혁신과	과장 김혜림(6276), 김승환 연구관(6686)